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제2024-313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(영광단주 공동주택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 및 『주택법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19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(행복주택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개요(변경)

구 분	당 초	변 경	비 고
가. 대지 위치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92-1번지 일원	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687번지	-
나. 사업면적(m ²)	8,018	8,057.70	증 39.70
다. 대지면적(m ²)	8,018	8,057.70	증 39.70
라. 연면적(m ²)	22,589.80	좌동	-
마. 사업 규모	아파트 2개동 (행복주택300세대, 지상15층) 및 부대·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	좌동	-
바. 구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동	-

4. 사 업 비 : 40,868,011천원(주택도시기금 15,279,000천원)
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4. 09.
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, 영광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